

대학원학칙시행세칙

[2018.09.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강남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별 학과 및 전공) 각 대학원 학과별 전공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07.09.20, 2009.08.24, 2010.10.26, 2012.10.25, 2014.10.15, 2015.11.02, 2016.10.17, 2017.02.21, 2017.11.06> [개정 2017.11.06][개정 2017.11.06]

제2장 입학

제3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의 입학(면입학, 재입학 포함한다.)전형은 전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후기에 실시 할 수도 있다.

② 본 대학원 입학전형 방법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학칙 제6조를 충족하는 자로서 현직 교직원에 한 한다. 다만, 교원자격증소지자로 현직 교직원이 아닌 자는 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또는 전공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④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전공은 전형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본 대학의 일반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06> [개정 2017.11.06][개정 2017.11.06]

제4조(지원절차)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나. 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다.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라. 재직,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기타 필요한 서류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나. 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및 대학 성적증명서

다. 석사학위졸업(예정)증명서 및 대학졸업증명서

라.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연구계획서

바. 기타 필요한 서류

제5조(일반전형) ① 각 학위과정 일반전형 입학은 서류심사와 면접(영어, 전공등)시험으로 한다. 다만 그 전형방법, 배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0.10.26>

② <삭제> 2010.10.26

제6조(특별전형) 각 학위과정 특별전형 입학시험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실시하며, 지원자격과 전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외국인학생의 범위) 학칙 제6조의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교포는 본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생(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함.)
2.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제8조(외국인학생 입학지원 서류) 외국인 학생이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
2. 출신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3. 출신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4. 여권 사본 1부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9조(외국인 입학전형) ① 외국인학생의 입학전형은 학칙 제7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술시험으로 하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06.19>

②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 및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가 다음 각 호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19>

1. 입학 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강남대학교한국어능력시험(KNKPT) 4급 이상
2. 졸업 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③ 외국어 전용과정인 국제대학원은 2항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7.08.16>

[개정 2017.08.16][개정 2017.08.16]

제10조(재입학) ① 학칙 제10조에 의하여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재입학원서를 소정의 기간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18>

③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재입학자가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9>

④ 재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인정받은 학점수에 따라 재입학사정시 결정한다.

⑤ 재입학의 등록에는 등록금 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9][개정 2012.10.09]

제11조(편입학) ①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별로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학자의 인정학기, 수업연한,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06>

구분	과정	인정학점	인정학기	수업연한	재학연한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박사과정	2 ~ 11	1	2 . 5 년	9 . 5 년
		1 2 ~ 1 8	2	2 년	9 년

	석사과정	2 ~ 11	1	1 . 5년	5 . 5년
		1 2 ~ 1 8	2	1 년	5 년
신학전공 (M.Div.)	석사과정	2 ~ 14	1	2 . 5년	5 . 5년
		1 5 ~ 1 8	2	2 년	5 년

③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는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와 원장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조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인정학점은 학적부에 인정학점으로 기재하며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평균평점을 산정한다. <개정 2009.11.18>

④ 편입학자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있어서 전적대학원에서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본교에서 실시하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6][개정 2017.11.06]

제12조(입학전형위원회 위촉) 대학원장은 출제, 채점 및 면접위원을 본 대학교 각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13조(합격자 사정기준) 합격자 사정은 학과별로 배정된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형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배점의 합한 점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다.

제14조(합격사정 및 발표) ① 대학원장은 입학전형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입학정원을 감안하여 합격여부를 사정한다.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표한다.

제15조(등록) ①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 및 소정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

③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해당 학기 개강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한다.

제16조(합격취소)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가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3장 교과목 개설 및 이수

제17조(교과목의 개설) ① 학과 주임교수는 각 학과에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당해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을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선정하여 제출한다.<개정 2009.11.18>

② 매 학기 개설하는 전공과목의 수는 전공별 재적생 수에 따라 10명 이하는 3과목이내, 11~20명은 4과목이내, 21~40명은 5과목이내, 41명이상은 6과목 이내로 개설한다.

③ 학과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④ <삭제> 2009.11.18

제18조(교과목이수)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학과별 교과과정표에 의한다

②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 학과(전공)의 교과목을 총 이수학점의 3분의 1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교육대학원내에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총

이수학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있다.<개정 2009.11.18, 2012.04.05>

③ 현직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자격증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09.02.19, 2009.03.01, 2009.11.18>

1.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은 교육상담을 전공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 18학점 이상을 포함한 24학점 이수한 자

2.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기본이수과목 14학점을 포함한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부전공교사자격증은 본인의 전공과 다른전공으로 입학한자가 해당전공에서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및 5과목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단,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 부전공 과목을 표시한다.

4. <삭제> 2009.11.18

④ 교육대학원내 평생교육사 관련 필수과목 15학점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11.18>[개정 2012.04.05] [개정 2012.04.05][개정 2012.04.05]

제19조(선이수과목) ① <삭제> 2009.11.18

② 선이수학점의 지정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까지 지정할수 있다.<개정 2009.11.18, 2010.10.26>

③ 선이수과목은 석사과정은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개설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8>

④ 선이수과목의 성적이 C(7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 학점을 인정한다. 다만, 인정학점은 학적부에 "P"로 표시한다.

⑤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과 융복합대학원 실천신학과 신학전공(M.Div)은 선수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 <개정 2008.09.01, 2017.08.16, 2017.11.06> [개정 2017.11.06][개정 2017.11.06]

제20조(수업일수 및 학점)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한 학기당 15시간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과(전공)에 따라 협장실습과목을 들 수 있으며, 학점은 교과과정에 의한다.<개정 2009.11.18>

④ <삭제> 2009.11.18

제21조(수료학점) ① 대학원별, 학과(전공)별 이수학점은 <학칙 제21조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선이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외에 선이수과목에 해당하는 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8>

② 융복합대학원 실천신학과 신학전공(M.Div) 학생은 동일전공(분야)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 3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학점은 학적부에 P로 표시한다.<개정 2008.09.01, 2009.11.18, 2017.11.06>

③ <삭제> 2009.11.18

④ 수료학점은 이수 교과목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과목별 성적은 70점(C)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11.06][개정 2017.11.06]

제22조(학점교류) 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대학원(본교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간 내에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향의 절차에 의하여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③ 국내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본 대학원의 당해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으며, 학기당 2과목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0.3.1>

④ 군위탁생은 학군 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원과 국방대학교 야간대학원에서 동일 및 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학기당 3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3.1>

⑤ 국외 대학원에서 취득가능 한 학점은 학칙 제21조 제3항의 범위 이내로 하며,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의 개설교과목과 관계없이 전공주임교수의 심의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2조 의2(군위탁생 학점인정) ① 학군 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원과 국방대학교 야간대학원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전공주임교수와 원장의 승인으로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거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인정학점으로 기재하며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평균평점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0.3.1]

제4장 수강신청 및 성적

제23조(수강신청) ①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매학기 일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시간이 충복되는 과목은 수강신청 하지 못 한다.

③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수강신청 변경) ① 수강신청과목의 취소,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경우 개강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변경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8>

②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과락(F)으로 처리된다.

③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포기는 개강일로부터 7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교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09.11.18>

제25조(강의계획서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해당학기 개강 전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교직과목) ① 교육대학원생은 일반교육학(교직과목),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등을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하며, 유아특수교육전공 및 특수교육전공은 6학점, 교육상담전공은 4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외 전공은 교직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11, 2015.06.01, 2018.09.17>

②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본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동일(유사) 교직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교직과목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조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인정학점은 학적부에 P로 표시한다.<개정 2009.11.18, 2013.10.11> [개정 2018.09.17]

[개정 2018.09.17]

제27조(성적)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종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입력 및 출력하여 확인한 후 당해 학기 성적평가표 및 출석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이 성적평가표를 제출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이미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교원의 과오로 인한 경우에는 담당교원이 성적정정 원서를 작성하여 사유서와 해당과목의 성적평가에 사용된 자료(출석부, 과제물, 시험 답안지 등)를 첨부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실습, 실기, 논문, 선이수과목 등은 P(합격), F(불합격)으로 처리하며, 학점으로는 인정(선이수과목은 졸업학점에 불포함)하나 평점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실습과목은 정규 교과목으로 본다. <개정 2009.02.19, 2013.10.11, 2017.11.06> [개정 2017.11.06][개정

2017.11.06]

제28조(재수강)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도 재수강할 수 있다. 단, 그 성적은 상위 성적을 취득학점으로 한다.

제5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재입학 등

제29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 경과 후 졸업 소요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하는 학점 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하여 징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2. 4학점 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③ 수료후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연구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등록금을 납부하고 당해학기 개시일로부터 8주 이내에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에는 휴학 당시에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학기 개시일로부터 8주이후에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30조(휴학) ① 휴학사유의 발생으로 재학 중 휴학을 원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8>

②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대휴학으로 구분한다. 일반휴학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에 휴학하는 경우이고, 군입대 휴학은 교육소집 또는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11.18>

③ 입학(편입학 포함)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 군입대,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의 휴학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편입학자와 재입학자의 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⑤ 등록기간 중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제31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을 원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한 후 등록을 포함한 복학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8>

②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31조 의1(전공변경) ① 이수할 전공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학기 이상을 이수 자

2.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② 전항의 변경은 학기 개시일 1주일 전까지 그 신청서<별지서식 5호>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만료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4.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한 자

5. 자원퇴학의 허가를 받은 자

제6장 자격시험

제33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1학기차 부터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09.11.18>

②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국어가 영어인 외국인은 한국어를 응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8>

③ <삭제> 2009.11.18

④ <삭제>

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어시험중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2.19, 2009.11.18, 2010.10.26>

1. <삭제> 2010.10.26

2. 면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TOEFL PBT 550점(CBT 213점, IBT 79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자

3.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를 이수한 자

⑥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어시험중 한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면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TOPIC 4급 이상 취득자 또는 본교 국제여학원 4급이상 통과자

2.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어학강좌를 이수한 자

3. 본교 국제여학원 한국어능력인정확인서를 받아 해당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자.

⑦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8.09.01> [개정 2011.12.02][개정 2011.12.02]

제34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은 3학기차 부터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07.09.20, 2007.11.29,

2008.03.28, 2008.09.01, 2009.11.18>

②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시험과목은 2개 과목으로 하며, 그 내용은 각 학과별로 교수회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 다만, 과목별 시험내용은 해당 학과 교과과정표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친 것으로 한다.<개정 2008.03.28, 2009.11.18>

③ 종합시험 시행은 각 학과별로 실시하며, 시험이 종료되면 시험 시행 전반 및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8>

제35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소정의 전형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합격인정)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종합시험의 각 과목에 대한 시험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종합시험의 응시과목 중 과락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03.01, 2009.02.19>

제37조(재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응시회수의 제한은 없다.

②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응시과목 중 불합격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과목만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제7장 공개강좌·연구과정

제38조(공개강좌) ① 공개강좌는 직무교양, 연구상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삭제> 2009.11.18

③ 공개강좌의 과목, 실시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연구과정) ①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자격을 갖춘자로써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입

학할 수 있다.<개정 2009.11.18>

② 연구생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 중 3과목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 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1.18>

③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8>

④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은 연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의2[삭제 2011.12.02][삭제 2011.12.02]

제8장 계약학과

제40조(입학정원 및 명칭) 계약학과의 명칭과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4.10.15, 2015.11.02, 2017.02.21, 2017.11.06>

[개정 2017.11.06][개정 2017.11.06]

제42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 할 수 있다.

[신설 2011.12.02][신설 2011.12.02]

제43조(지원자격 및 선발) 지원자격은 학칙 제6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선발절차는 제4조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1.12.02][신설 2011.12.02]

제44조(운영경비 및 납입금) ① 계약학과와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 본교 교비회계로 처리하며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계약학과의 학생이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등 신분이나 지위에 변동이 있거나 위탁단체와의 계약 해지 등으로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02][신설 2011.12.02]

제45조(학사관리)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는 일반 학위과정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의 특성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개정 2013.07.12>

[개정 2013.07.12][개정 2013.07.12]

제46조(설치 및 운영기간) 설치·운영기간은 본교와 위탁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신설 2011.12.02][신설 2011.12.02]

제47조(학사제도 예외 적용)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개정 2013.07.12, 2013.12.24> [개정 2013.12.24][개정 2013.12.24]

제4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계약학과 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원위원회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1.12.02][신설 2011.12.02]

제4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2. 계약학과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학과에 관한 주요 사항

[신설 2011.12.02][신설 2011.12.02]

제9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41조(교과과정편성 및 수업) ①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일반 학위과정 동일 명칭 전공과 같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

- ②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개정 2011.12.02]

제50조(학적부기재사항 변경)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8> [신설 2011.12.02][신설 2011.12.02]

제10장 증명서 발급

제51조(증명서 발급) ① 다음 각호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06.23, 2009.02.19, 2009.11.18>

1. 학위수여증명서 :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당해학기 학위수여예정자
3. 재학증명서
4. 휴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제적증명서

- ② 전항의 신청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요율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8.06.23>

종 류	한 글	영 문
학위수여증명서	1,000원	1,000원
학위수여	1,000원	1,000원
예정증명서	1,000원	1,000원
수료증명서	1,000원	1,000원
재학증명서	1,000원	1,000원
휴학증명서	1,000원	1,000원
성적증명서	1,000원	1,000원
제적증명서	1,000원	1,000원

- ③ 제 1항의 증명서는 영문본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8.06.23>

[신설 2011.12.02][신설 2011.12.02]

부 칙

- (1) 본 시행세칙은 199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세칙은 199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세칙은 199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세칙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세칙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세칙은 200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9) 이 개정세칙은 2004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10) 1.(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4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가. 이 개정 세칙 시행과 동시에 사회복지전문대학원학칙시행세칙 및 특수대학원학칙시행세칙, 실천신학대학원학칙시행세칙, 교육대학원학칙시행세칙, 산업정보대학원학칙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나. 제21조의 수료학점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11)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8조제2항, 의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의 종합시험과목은 현재 재학중인 학생부터 적용한다.
- (12)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이 시행세칙 개정전에 실천신학대학원 M.div과정에 재적중인 동일전공(분야)자에 대하여는 45학점을 인정한다. 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여 심사를 완료하고 합격한 경우에는 논문학점 6학점을 부여한다.
- (13) 이 개정세칙은 2005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4) 이 개정세칙은 2005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15) 이 개정세칙은 2005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 (16) 이 개정세칙은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7) 1.(시행일)이 개정세칙은 2006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2조의 학과 및 전공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18) 이 개정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 1.(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7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2조 및 제34조는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0) 이 개정세칙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1) 이 세칙은 2008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2) 이 세칙은 2008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3) 이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4) 1.(시행일)이 세칙은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교과목이수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 제4항은 재적생 및 수료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25) 이 세칙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6) 이 세칙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7)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8) 1.(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0월 26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19조 제2항의 선이수학점의 지정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9) 이 세칙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30)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 (31) 이 세칙은 2012년 4월 5일부터 시행하되,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32) 이 세칙은 2012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33) 이 세칙은 201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34) 이 세칙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35) 이 세칙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36)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제2조의 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37) 이 세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38) 1.(시행일)이 세칙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이 세칙 시행 당시의 부동산행정대학원이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14학년도 이전 재학생들의 대학원 명칭도 변경된 대학원으로 적용한다.
- (39)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40) 이 규정은 2015년 11월 02일로부터 시행한다.
- (41) 이 세칙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42) 이 세칙은 2017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43) 이 세칙은 2017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44) 이 세칙은 2017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45) 이 세칙은 2018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 대학원별 학과 및 전공 <개정 2007.09.20, 2009.02.19, 2009.08.24, 2010.10.26, 2012.10.09, 2012.10.25., 2013.10.11., 2014.10.15., 2015.06.01., 2015.11.02, 2016.10.17, 2017.02.21, 2017.11.06>

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대학원명	과정	학과(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성서신학전공, 이론신학전공, 실천신학전공) 부동산학과(부동산관리 · 경영전공, 부동산제도 · 정책전공, 부동산개발 · 기술전공) 세무학과 경영학과(인사 · 조직전공, 재무관리전공, 회계학전공, 마케팅전공, 생산관리전공, 국제경영전공, MIS전공), 국어국문학과(국어학전공, 고전문학전공, 현대문학전공)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교육행정전공, 유아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석사	신학과(Th.M), 국어국문학과(한국어교육전공, 문학전공),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세무학과, IoT전자공학과,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교육행정전공, 유아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국제통상학과, 실버산업학과, 심리학과, 수화언어통번역학과, 보건학과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전공)
	석사	사회복지학과
실천신학 대학원	석사	신학전공(Th.M) 신학전공(M.Div)-목회학전공, 목회상담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목회상담전공(2015입학자까지) 사회복지전공(2016입학자까지)
교육 대학원	석사	교육행정전공, 교육상담전공, 청소년상담전공, 유아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전공, 언어치료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부동산·법무· 행정대학원	석사	부동산학과, 법학과, 로컬거버넌스학과
경영대학원	석사	경영학과
국제대학원	석사	국제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나.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대학원명	과정	학과(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성서신학전공, 이론신학전공, 실천신학전공) 부동산학과(부동산관리 · 경영전공, 부동산제도 · 정책전공, 부동산개발 · 기술전공) 세무학과, 경영학과(인사 · 조직전공, 재무관리전공, 회계학전공, 마케팅전공, 생산 관리전공, 국제경영전공, MIS전공), 국어국문학과(국어학전공, 고전문학전공, 현대문학전공)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교육행정전공, 유아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전공)
	석사	신학과(Th.M), 국어국문학과(한국어교육전공, 문학전공),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세무학과, IoT전자공학과,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교육행정전공, 유아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국제통상학과, 심리학과, 수화언어통번역학과(수화언어통번역학전공, 수화언어교육학전공), 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 대학원	석사	교육행정전공, 교육상담전공, 청소년상담전공, 유아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전공, 언어치료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대학원명	과정	학과(전공)
융복합 대학원	석사	실천신학과(신학전공(Th.M), 신학전공(M.Div)-목회학전공, 목회상담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학과, 로컬거버넌스학과(사회적경제전공, 행정학전공), 경영학과, 실버산업학과(실버산업전공, 요양기관경영전공)
국제대학원	석사	국제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국제항공서비스경영학과

〈별표 2〉 대학원 계약학과 명칭 및 입학정원[신설 2012.04.05.]<개정2014.10.15., 2015.11.02, 2017.02.21, 2017.11.06>

구분	대학원명	과 정	계 열	학과(전공)	입학정원	비 고	
일반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부동산학과 세무학과 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8명		
				신학과 국어국문학과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세무학과 교육학과 국제통상학과 심리학과 수화통번역학과 사회복지학과	10명		
		석사학위과정		자연			
				공학			
특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교육행정전공 교육상담전공 유아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유이특수교육전공 언어치료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청소년상담	21명		
	융복합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실천신학과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로컬거버넌스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실버산업학과	13명		
	국제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국제경영학과 국제항공서비스경영학과	4명		
총 계					56명		